

회원 동화아이위시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건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건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될 수 있음.
- 단,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 기간 및 계약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관람이 가능함.
 - ※ 건본주택 방문은 회원 동화아이위시 홈페이지(<http://www.hw-iwish.com>)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함.
 - ※ 건본주택 방문 예약은 회원 동화아이위시 홈페이지(<http://www.hw-iwish.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음
 - ※ 당첨자 대상으로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며, 회원 동화아이위시 홈페이지(<http://www.hw-iwish.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건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및 동반자 1인만 입장 가능함.(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당첨자 및 건본주택 방문자 분들의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됨.
 -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 기타 건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건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회원 동화아이위시 분양 상담 전화(053-584-56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3.03.임.(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됨.(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함.(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동일 신청 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2017.9.20.)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2020.09.03.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함.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음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함.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단,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에 의거 '성년자', '세대',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됨.
 -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 및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부·모·장인·장모·시부·시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아들·딸·사위·며느리·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전혼자녀 등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 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고)
 -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완납일'(실거래신고서 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함.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함.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w-iwish.com>)에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안내 : 당사에서 통지받은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접수 및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 참여가 가능하며, 통지받지 못한 예비입주자의 경우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 이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류접수 및 2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서 잔여물량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는 없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단,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함.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됨.(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요건 적용 유권해석 알림(주택기금과-13, 2018.1.2.)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6개월 미만 거주한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로 분류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 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만, 주택법 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또한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청약 유의사항·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당첨자 중 부적격 의심자로 소명을 요청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내용외 자세한 사항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 발표일, 지정계약기간 안내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음.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1.03.15(월)	2021.03.16.(화)	2021.03.17.(수)	2021.03.18.(목)	2021.03.24.(수)	2021.03.25.(목) ~ 2021.03.31.(수)	2021.04.05.(월) ~ 2021.04.07.(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견본주택 방문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52-2번지 화원 동화아이위시 모델하우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청약,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I

공급내역 및 분양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건축과-5929호(2021.03.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30-8 담 외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 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4개동, 총 568세대 [특별공급분 224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4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85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7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956대 [공동주택 772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48대, 근린생활시설 36대]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소계		
민영 주택	2021000090	01	84.5927A	84A	84.5927	30.2245	114.8172	6.2991	49.7034	170.8197	20.3029	72	7	6	14	2	5	34	38	2
		02	84.1462B	84B	84.1462	29.7119	113.8581	6.2659	49.4411	169.5651	20.1958	70	7	6	14	2	5	34	36	2
		03	84.1138C	84C	84.1138	32.1650	116.2788	6.2635	49.4221	171.9644	20.1880	282	28	26	57	9	20	140	142	8
		04	102.5299	102	102.5299	35.5942	138.1241	7.6348	60.2425	206.0014	24.6080	140	-	12	-	4	-	16	124	4
		05	152.0722	152	152.0722	62.0150	214.0872	11.3240	89.3518	314.7630	36.4986	4	-	-	-	-	-	-	4	-
합 계												568	42	50	85	17	30	224	344	16

■ 공급대상 및 면적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M.D.F포함)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함.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등 제외)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공동주택 각 세대별, 오피스텔 각 실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평 = ㎡ x 0.3025 또는 ㎡ ÷ 3.3058)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타입	동(라인)	층별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계약시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21-07-05		22-01-05	22-10-05	23-08-05	23-12-05	24-04-05	입주지정일
84A	103동	21층이상	40	154,580	320,320	-	474,900	47,490	47,490	47,490	47,490	47,490	47,490	47,490	142,470
		10-19층	20	152,952	316,948	-	469,900	46,990	46,990	46,990	46,990	46,990	46,990	46,990	140,970
		7-9층	6	150,348	311,552	-	461,900	46,190	46,190	46,190	46,190	46,190	46,190	46,190	138,570
		5-6층	4	147,093	304,807	-	451,900	45,190	45,190	45,190	45,190	45,190	45,190	45,190	135,570
		4층	2	142,211	294,689	-	436,900	43,690	43,690	43,690	43,690	43,690	43,690	43,690	131,070
84B	105동	21층이상	38	154,580	320,320	-	474,900	47,490	47,490	47,490	47,490	47,490	47,490	47,490	142,470
		10-19층	20	152,952	316,948	-	469,900	46,990	46,990	46,990	46,990	46,990	46,990	46,990	140,970
		7-9층	6	150,348	311,552	-	461,900	46,190	46,190	46,190	46,190	46,190	46,190	46,190	138,570
		5-6층	4	147,093	304,807	-	451,900	45,190	45,190	45,190	45,190	45,190	45,190	45,190	135,570
		4층	2	142,211	294,689	-	436,900	43,690	43,690	43,690	43,690	43,690	43,690	43,690	131,070
84C	101동 102동 103동 105동	21층이상	154	152,952	316,948	-	469,900	46,990	46,990	46,990	46,990	46,990	46,990	46,990	140,970
		10-19층	80	151,325	313,575	-	464,900	46,490	46,490	46,490	46,490	46,490	46,490	46,490	139,470
		7-9층	24	148,721	308,179	-	456,900	45,690	45,690	45,690	45,690	45,690	45,690	45,690	137,070
		5-6층	16	145,466	301,434	-	446,900	44,690	44,690	44,690	44,690	44,690	44,690	44,690	134,070
		4층	8	140,583	291,317	-	431,900	43,190	43,190	43,190	43,190	43,190	43,190	43,190	129,570
102	101동 102동	21층이상	76	175,130	358,882	35,888	569,900	56,990	56,990	56,990	56,990	56,990	56,990	56,990	170,970
		10-19층	40	173,594	355,733	35,573	564,900	56,490	56,490	56,490	56,490	56,490	56,490	56,490	169,470
		7-9층	12	171,135	350,695	35,070	556,900	55,690	55,690	55,690	55,690	55,690	55,690	55,690	167,070
		5-6층	8	168,062	344,398	34,440	546,900	54,690	54,690	54,690	54,690	54,690	54,690	54,690	164,070
		4층	4	163,453	334,952	33,495	531,900	53,190	53,190	53,190	53,190	53,190	53,190	53,190	159,570
152	101동 102동	21층이상	4	276,877	567,385	56,738	901,000	90,100	90,100	90,100	90,100	90,100	90,100	90,100	270,3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층수는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함)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 85㎡ 초과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5927A	84.1462B	84.1138C	102.5299	152.0722
약식표기	84A	84B	84C	102	152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설치비용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분양금액은 추가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102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장애인	2	2	10		14
	국가유공자	2	2	10		14
	장기복무제대군인	1	1	3		5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1	1	3		5
	중소기업 근로자	1	1	2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 건설량의 10%범위)		6	6	26	12	50
신혼부부 특별공급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소득기준	우선공급(70%)	10	10	40	60
		일반공급(30%)	4	4	17	25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주택 건설량의 3%범위)		2	2	9	4	17
생애최초 특별공급(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7% 범위)	소득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70%)	4	4	14	22
		생애최초 일반공급(30%)	1	1	6	8
합 계		34	34	140	16	22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음.(152 타입의 특별공급 배정물량이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 1회 제한 예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함)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다.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생애최초/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구 분	내 용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예)전혼자녀 등</p>

청약자격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p> <p>가.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나. 청약부금 :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85㎡ 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p> <p>다.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p> <p>라.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p> <p>가.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나. 청약부금 :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85㎡ 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1순위자</p> <p>다.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1순위자</p> <p>라.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p>※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p>
------------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당첨 동·호수 결정	<p>•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p> <p>•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예비 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에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잔여 물량 발생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예정)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공급(42세대)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유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 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공급(50세대)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	--

당첨자
선정
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를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수 발생시에도 동·호수 변경불가)
 - ※ 다자녀가구 배정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 재혼배우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다자녀 특별공급시 자녀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다자녀가구 배정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정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자녀수(1)	40	5명 이상	40	•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나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인터넷 청약신청자는 가입확인서 제출 생략)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바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공급(8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
 -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함.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521,049원~ 10,529,467원	7,947,892원~ 11,127,047원	8,374,735원~ 11,724,62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9,025,259원~ 12,033,677원	9,537,470원~ 12,716,626원	10,049,682원~ 13,399,57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p>※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 서류(계약체결 전 제출)</p>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체 건설량의 3% 범위 공급(17세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 기간산정시 노부모(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자가 우선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정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경쟁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양자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7% 범위 공급(30세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3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공급유형</th>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6">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th> </tr> <tr>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td> <td>130% 이하</td> <td>7,839,208원</td> <td>9,222,467원</td> <td>9,222,467원</td> <td>9,777,362원</td> <td>10,332,258원</td> <td>10,887,154원</td> </tr> <tr> <td>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td> <td>130% 초과~160% 이하</td> <td>7,839,209원~ 9,648,256원</td> <td>9,222,468원~ 11,350,728원</td> <td>9,222,468원~ 11,350,728원</td> <td>9,777,363원~ 12,033,677원</td> <td>10,332,259원~ 12,716,626원</td> <td>10,887,155원~ 13,399,574원</td> </tr> </tbody> </table>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777,362원	10,332,258원	10,887,154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777,363원~ 12,033,677원	10,332,259원~ 12,716,626원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777,362원	10,332,258원	10,887,154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777,363원~ 12,033,677원	10,332,259원~ 12,716,626원	10,887,155원~ 13,399,574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 																																				

<p>선정방법</p>	<p>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신청 시 모두 추첨제로 접수되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포함)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 만30세 미만 : 자녀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내용
<p>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세대원</p> <p>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계약 물량은 제외)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p>
<p>부양가족 인정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p>
<p>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 일반공급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 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p>당첨자선정 / 동·호수 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동/호 구분없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정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정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추첨제 우선공급]</p> </div> <p>※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p>예비입주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구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구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w-iwish.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 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타주택 포함)에 중복으로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IV

청약신청 일정 및 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2021.03.15.(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021.03.16(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대행은행 창구
		기타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경상북도 거주자)	2021.03.17(수) 08:00~17:30		
	2순위		2021.03.18(목) 08: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청약시 가정형편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바람.

※ 당첨자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당첨자 선정일자와 시간을 인지하시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 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주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일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1.03.24.(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1.03.25.(목) ~ 2021.03.31.(수) 10:00 ~ 16:00 장소 : 건본주택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무작위 전산추첨)함에 따라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시 개별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의 서류제출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해당 공급유형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시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가할 수 없음(단, 일반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 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된 주택은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쑤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3.24(수) ~ 2021.04.02(금)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3.24(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21.03.25(목) ~ 2021.03.31(수)]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함.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안내 : 당사에서 통지받은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접수 및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 참여가 가능하며, 통지받지 못한 예비입주자의 경우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 이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류접수 및 2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1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행사에서 잔여물량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는 없음.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화원 동화아이위시 홈페이지(<http://www.hw-iwish.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함.(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화원 동화아이위시 견본주택(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52-2번지)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함.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자 중 부적격 의심자로 소명을 요청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표1> 일반공급(예비입주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 기준	서 류 제 출 대 상 및 유 의 사 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 통 서 류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⑥-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⑦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⑧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가정제 당첨자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 기준	서 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가정제 예비입주자		○	②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③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녀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①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③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④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⑤ 인장	대리인	• 서명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표2>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⑦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⑧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⑨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
다자녀 특별공급	○		① 다자녀 배정 기준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이하일 경우
		○	⑥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⑧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⑧ 소득증빙 서류 (<표3>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⑨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④ 소득증빙 서류 (<표3>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⑤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4>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⑥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①노부모 가정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④ 기타(가정 확인 서류) (<표1> 참고)	-	• 가정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정제 당첨자 서류 참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①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③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④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⑤ 인장	대리인	• 서명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 입증서류제출	• 접수장소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	2021.04.05(월) ~ 2021.04.07(수)(3일간)	화원 동화아아위시 건본주택
일반공급	10:00 ~ 16:00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기본서류 (특별공급포함)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대리발급분 절대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 생략가능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시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리인 계약시 추가구비서류		○	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하며 대리인은 가족에 한하여 인정함.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본인발급분만 가능하며, 대리발급분 절대 불가)
		○	위임장	-	- 대리인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함.
-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급계약은 취소함.(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분양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 검색을 의뢰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은 무효처리함)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에 의거 부동산거래 신고시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름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한다.(동법 제57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관련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의 방법으로 통보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계약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예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타 분양 아파트와 본 아파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면밀히 비교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함.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보증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생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함.

■ **분양금액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관리계좌	대구은행	504-10-407114-1	코리아신탁(주)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납부금액, 납부일정 별도 안내하지 않음)로 납부하여야 하며, 호실별 금액이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바람.(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101홍길동’ / 101동 1101호 계약자 → ‘1011101홍길동’)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사업주체에서 응자 알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정책(DTI, LTV, DSR, RTI 등의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분양금액의 10%(계약금) 완납시 중도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으로 개인별 대출한도가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자는 분양금액(미납금액, 연체료 포함)을 본인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대출신청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인지대 등)은 계약자 부담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중도금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금액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요구로 분양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일부 분양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대출금 신청을 위한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 하지 않음, 미납 시 연체료 가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익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으로 함)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자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해당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금액(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포함)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외국인 및 외국법인, 기타 정책 및 금융회사의 대출적격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자납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안내**

- 예비당첨자의 사전서류 경수일정,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 통지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입주예정일 : 2024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각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상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②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⑤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II

별도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유상 제공하며, 비확장 선택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음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20%)	잔금(8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16,000,000	3,200,000	12,800,000
84B	16,000,000	3,200,000	12,800,000
84C	16,000,000	3,200,000	12,800,000
102	20,000,000	4,000,000	16,000,000
152	40,000,000	8,000,000	32,00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대피시설 출입문, 방화문, 기타 확장부위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탈출형 대피시설의 형태, 마감, 출입문 및 마감 등은 실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탈출형 대피시설의 위치에 따라 결로, 단열, 미관, 보안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발코니확장 공간에 해당되는 각종 기본제공품목(무상옵션)의 제공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타입)	선택안	설치대수(실내기)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1.07.05.	입주지정일	
84A 84B 84C	선택1	2	거실,내실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삼성전자
	선택2	4	거실, 내실, 방1, 방2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102	선택1	3	거실, 주방, 내실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선택2	6	거실, 주방, 내실, 방1, 방2, 방3	8,200,000	820,000	820,000	6,560,000	
152	선택1	3	거실, 주방, 내실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선택2	7	거실, 주방, 내실, 방1, 방2, 방3, 가족실	9,800,000	980,000	980,000	7,840,000	

- 상기 천장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옵션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배수관이 천장속에 설치되어 시스템에어컨에 연결되므로, 별도의 매립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 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거실/안방의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추가 선택품목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주택형(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1.07.05.	입주지정일	
빌트인가전	TBI 냉장고	LG전자	전타입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S711SI24B
	TBI 김치 냉장고	LG전자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K221PR14BL2/R1
	식기세척기	LG전자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DUB22SB
	신발살균기	(주)쿠스코		200,000	20,000	20,000	160,000	ZPP-14U
	에어샤워시스템	(주)그렉스		600,000	60,000	60,000	480,000	AS-150(에어샤워),DSC-300(에어브러쉬)
현관 특화	현관중문	삼성TGL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3연동

3)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사양은 견본주택/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품목의 계약일정·계약내용·납부일정(계약금,잔금 등) 및 제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확장대금 관리계좌	대구은행	504-10-407121-4	코리아신탁(주)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여야 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금 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시기 바람.
- 상기 유상옵션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유상옵션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지정된 유상옵션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은행영업일 익일 기준으로 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일부 오차부분은 적의 조정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관련 홈페이지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시점 및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VR 동영상과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아파트는 실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이용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당사에서 임의로 선정 함.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플러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 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단지 외부여건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변경)허가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등은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형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사업부지 도로면 인근에 위치해 있으므로 빈번한 차량통행에 의한 도로 혼잡 및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본 아파트 건축(변경)허가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체·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구역 주변에 조성되는 차도 및 보도 일부는 보도경계를 도로경계석으로 명확히 구분 후 도로관리청에 이관할 예정임.
- 인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부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은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 하며, 기부채납 불가시 해당기관에 점·사용권을 이관하는 서류를 공증 후 제출할 예정임.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는 화남초에 학생배치가능, 중학생은 9학교군 내 분산배치 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2학군)내 분산배치 가능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음).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권장사항 및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의 임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단지 외관의 형태, 색채, 줄눈, 재료, 야간경관조명, 동번호, 각종 사인, 옥외시설물 등은 관할관청협의, 브랜드 표현 등으로 실제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 경계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단지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 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후 발생 하는 제반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 및 색채 등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난방방식은 도시가스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부 설계변경이 반영될 수 있음.)로 설계되어 있고, 세대내 일부 실간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른 벽체와 차이가 날 수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경계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관리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임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계획 및 인가조건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된 관련 도면과 자료,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사업부지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조성된 공지로 입주인 외에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임.
- 사업지 내에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는 불특정다수에게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헨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하여야 함.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 앞동으로 인한 시야가 차단됨을 확인하시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한 상업시설 및 인근단지 동간거리로 인해 각 세대 측벽 창 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제한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의 최상층 및 그 하부층 세대는 상부층 및 지붕의 우수 및 오.배수 배관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를 선택한 세대의 아래층에 위치한 아파트는 위층세대의 급배수 설비 및 우수 배관이 수평 설치됨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전 세대 해당, 주로 최상층 및 당해 단지 152형 하부 층)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아파트 3개소(재활용품보관소 포함), 오피스텔 1개소가 계획되어있고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 지상주차장이 인접한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출입시 경광(사이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진입부로 인해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경관조명, 사인물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는 지상3층에 위치한 오픈스페이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발생,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어린이 놀이터시설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 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함
-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헬륨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공동수신설비용 안테나(103동 4001호 및 4002호의 옥상), 이동통신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발전설비, 경관조명, 각종환기용 벤츄레이터(무동력흡출기), 소화수조(소화물탱크실, 펌프실, 인명구조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전파방해,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받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당 사업지는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 입주 후 주변시설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실 배치, 구성, 건축이용계획, 명칭, 창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곱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설치 의무 사항이 아닌 집기 및 마감재는 설치가 되지 않거나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인 지상3층 경로당,어린이놀이터, 지상2층 관리사무소,SHOP, 지상1층 어린이집,SHOP, 지하1층~2층 전기실,발전기실,물탱크실,펌프실,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사생활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인 지상3층 경로당,어린이놀이터, 지상2층 관리사무소,SHOP, 지상1층 어린이집,SHOP, 지하1층~2층 전기실,발전기실,물탱크실,펌프실, 주민공동시설 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방법 등을 정하여 공동 사용
- 업무시설(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인 지상3층 헬스장,스크린골프,탁구장,GX룸, 지상2층 관리사무소,지상1층 주거 및 비주거 방재센터, 지하1층~2층 발전기실,전기실,펌프실,소화약재실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세대는 소음, 진동, 사생활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
- 업무시설(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인 지상3층 헬스장,스크린골프,탁구장,GX룸, 지상2층 관리사무소,지상1층 주거 및 비주거 방재센터, 지하1층~2층 발전기실,전기실,펌프실,소화약재실 주민공동시설 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방법 등을 정하여 공동 사용함.
-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의 부대복리시설은 구분되어 있으며,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관리단이 상호협의하여 공동 및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관리는 입주초기에는 사업주체의 임의로 관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관리단이 구성 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한다. 이에 입주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계획 상 주동형태 및 층별, 향,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건,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인접세대는 사생활권과 일조건,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인접세대는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어 소음, 분진, 악취,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저층세대들은 소음, 분진,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경관 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상가에 인접해 있는 인근 세대는 인근에 설치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상가주차장 출입구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물 내·외부 조경, 시설물, 기계설비(급배기팬, 급배기구, 실외기 등) 등에 의하여 소음, 냄새, 그늘음, 진동 및 조망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거시설의 부대시설에 사용되는 실외기 장비, 샤워설비, 헬륨이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에서의 이의 제기 및 시설물의 임의 해체, 변경을 할 수 없음.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거나 세대와 인접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단지 진출입시 바람,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입을수 있음.
- 최상층과 승강기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깊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6조 5항에 따른 화재 시 피난을 위한 탈출형 대피시설(하향식 피난구)이 아파트 전 세대내 발코니 외부에 설치됨.
- 탈출형 대피시설의 난간대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이삿짐의 이동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 소화전, 스피커, 비상벨,유도등 등이 설치 될 수 있음
- 단지내 통로 및 주출입구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음
- 상가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오피스텔 부지와 경계 분리 및 분할은 불가하며 공유지분임
- 아파트 및 상가의 저층부 마감은 석재 및 도장재 혼합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석재와 도장재적용 비율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가의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가는 별도 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및 외관(외벽형태, 재료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주차장 출입구는 1개소(동측)이며, 진출입 도로가 협소하여 혼잡하거나 대기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 할 수 있음.
- 서측 1층 출입구 및 남측 1층 출입구는 비상용 출입구임으로 주차 및 접근이 불가함.
- 상가 주차장 및 오피스텔 출입은 서측 1곳으로 지상2층 일부 주차장을 이용함.
- 지하 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에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동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전기차충전시설에 대한 전기사업자간의 전기요금은 단지 전체의 아파트요금제도에 따라 적용 되도록 되어있고, 별도의 요금제도로 변경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계약종별변경과 그에 따른 변경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과 상가 공용기계실 및 장비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이용 등은 공동으로 하여야 함.
- 지상 및 지하 주동 출입구, 옥탑 시설물, 커뮤니티 입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의무화법의 시행에 따라 공용부 일부에 이동통신설비가 설치 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고층건물러 준공된 후 난시청지역이 발생할 수 있음.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람에,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분양홍보를 위한 CG 및 모형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구와 벽체 사이 이격거리 없이 간략히 표현하였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가스배관,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임

- 전기/통신(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월패드, 세대분전반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구조형식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배관정검을 위해 정검구가 설치됨.
- 본 공사시 타일,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강화인조대리석 및 석재(주방벽, 현관, 화장대)는 분할하여 시공되며 재료간 맞닿는 부위는 코킹처리 하여 마감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단위세대에 시공되는 타일공사 중 줄눈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복도 및 거실에 설치되는 아트판 줄눈의 폭, 깊이는 변경 될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및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 및 거실벽의 인조대리석 마감시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 수전이 없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실외기실은 우수, 배수배관만 설치됨)
-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호(층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바닥, 벽, 천장부위의 가구 (주방, 방,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 마감재(벽지, 바닥재, 타일 등)가 미시공 됨.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방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주택 마감자재 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옵션품목등을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가변형 벽체(건식고정) 설치 또는 미설치의 선택에 따라 발생할 경우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가변형 벽체 선택형 평면 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설치 개소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별도공사를 요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내실 드레스룸 및 거실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제어됨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내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하부, 위생도기류 하부에는 제외됨
- 대피공간, 최상층, 축세대, 최하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화재시 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탈출형 대피시설은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피시설내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를 개방시 해당층과 직하층에 경보음이 발생되므로 화재시 피난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탈출형 대피시설의 출입문은 철재 방화문으로 설치되고, 위층 하향식 피난구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해당층의 탈출형 대피시설을 통하여 세대내로 출입이 가능하므로 평상시 탈출형 대피시설의 방화문 시건장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대피공간에 탈출형 대피시설이 시공되며 탈출형 대피시설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피난구는 본 공사시 위, 아래층과 교차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문 및 창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 및 분배기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 들 수 있음.
- 단위세대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방)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본 공사시 벽면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 되며,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 하시기 바람.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발코니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기본형은 세대환기 장치가 노출되어 시공될 예정임)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대피시설(하향식 피난구)의 출입문은 철재 방화문으로 설치되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입주후 개별 인테리어공사를 할 경우에는 소방공사등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는 전문공사업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경우 자동형 제품으로 에어컨 작동시 실외기 동작을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하여 루버가 자동으로 열리고 실외기 정지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임
- 각 세대별 전기용량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전기시설) 제1항에 따라 계획하였고, 간선설비등은 “내선규정” 부록[표300-2-1. 간선의 수용율 표의 2. 분양주택, 고층주택(전기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의 수용을 표에 의거하여 산정 하였다.

■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판상형 구조로 부대복리시설은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대지인접도로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세대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해야 할 수 있음.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층의 환기, 채광, 소방, 이동을 위한 각종 시설물과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 될 수 있음.
-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설치되는 채광창의 위치는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동 공용 홀 계획에 따라 현관, 욕실, 드레스룸, 방 등 일부 내부공간이 엘리베이터, 계단실과 벽체를 공유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단지주변의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환경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모형에 표현된 단지경계 외부 공간[주변도로(도로, 보행자)]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으로 달라 질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발전기가 가동 시 연기,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함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분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은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외부환경디자인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인허가과정 및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입면 시공시 입면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옥상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건축(변경)허가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축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APT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환경

- 대구광역시 및 인허가 관청의 도시계획시설(주변 도로, 도로확장공사)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은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 등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곱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곱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 명칭, 실 배치는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에서 변경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작은도서관,헬스클럽, 경로당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지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단, 공동주택 입주자와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점(주)자의 구분된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시설 입주자 관리단이 상호협의를 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 등에는 사업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변경)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건축(변경)허가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전시조명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임.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하부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시 하부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 또는 부착안내문구 처리된 세대 환기 장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통신수구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통신수구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 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기기들의 위치는 본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른 위치에 설치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복도, 거실, 방, 주방, 욕실등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기기들의 위치는 본시공시 견본주택과 다른 위치에 설치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님
- 견본주택 세대 가구 도어에 부착된 글씨 안내 문구는 당사가 제안하는 수납방법을 제시해준 것이며 견본주택 연출용으로 본 공사시 부착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스마트홈

- IoT서비스제휴사(이하 “제휴사”)의 단지별 전용APP에서 홈네트워크와 연결된 기기를 제어 할 수 있으나 별도의 가전기기를 단지별 “제휴사” 전용APP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휴사의 음성인식스피커 및 제휴사와 호환되는 가전기기등을 입주인이 개별 구매하여 “제휴사” 전용APP에 등록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고, 호환되지 않는 가전기기등은 제조사의 APP 또는 가전기기별 전용 APP을 통해서만 제어할 수 있고, 통신환경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휴사”의 단지별 전용APP은 제휴사가 지정한 일정기간을 무료로 이용하신후 계속하여 이용 하시려면 “제휴사”와 개별로 약정하여야 하고, 이때는 월 이용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제휴사”의 단지별 전용APP은 제휴사의 사정으로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사 전용APP은 “제휴사”의 단지별 전용APP과 통합하여 서비스 될 수 있고, “제휴사”의 단지별 전용APP 무료 사용기간이후에 홈네트워크사 전용APP을 지원 할 수 있다.
- 자세한 문의는 견본주택 및 분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지상 및 지하에 이동통신 중계장치가 설치되오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임의로 훼손 할 수 없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사항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등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으로 공사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예비 인증서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의 무 사 항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 준수함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 준수함
	방습층 설치(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 준수함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 준수함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설치함
	고효율 전동기(라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함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함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함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함
	조명설치(다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사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함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함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함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토목/기계	전기	소방 / 정보통신
회사명	(주)도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서한건설탄트(주)
감리금액(원)	2,710,655,200	659,890,000	748,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3412021-101-0000100호	₩196,398,72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일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분	내용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p>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div> <p>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p>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div>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p>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 코리아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주)동화주택 / (주)동화건설	(주)동화주택 / (주)동화건설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729 (3층)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729(3층)	
법인등록번호	174811-0002347 / 170111-0209537	174811-0002347 / 170111-0209537	

■ **건본주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52-2번지

■ **홈페이지** : <http://www.hw-iwish.com>

■ **분양문의** : 053)584-56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건본주택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어 내방하시기 바람.